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정보 사회의 인권

# 계속되는 유출

우연? 필연!

갈수록 규모가 커져

2008년  
하나로  
텔레콤



600만 명

2008년  
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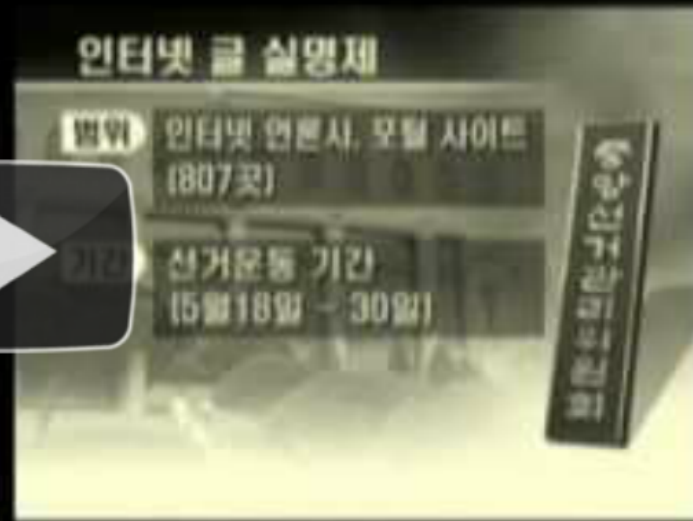
1천8백만 명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3천5백만 명



그러나  
그 주민등록번호가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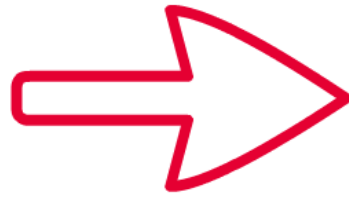


우연? 필연!

# 정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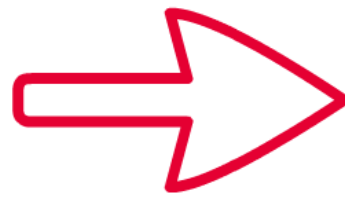
혜택과 위기

디지털



대규모 수집과  
대규모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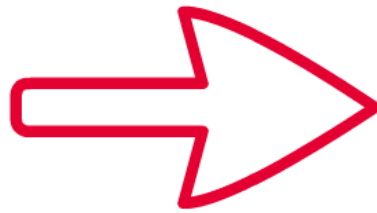
**이동성**



**신상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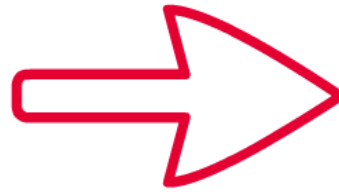


기록성



통신과정의  
모든 기록

비소모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상품화**

**개인정보의  
교환가치**

# 감시의 속성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감시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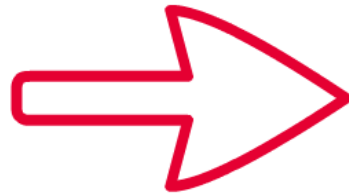


감시란 특정한 사람들이나 인구 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을 관리 혹은  
통제하길 원하는 조직들이 개개인의 세세  
한 일상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상화된  
방식들을 말한다

- 데이비드 라이언



국가의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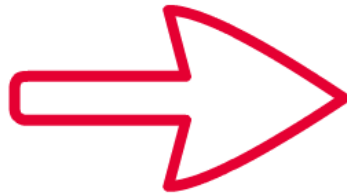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검찰	3	166,452	1,295,968
경찰	263	36,736,650	3,958,055
국가정보원	6,840	4,789	102,979
군수사기관등	61	396,991	491,989

\* 방송통신위원회, 2011



기업의  
감시



구글 매출의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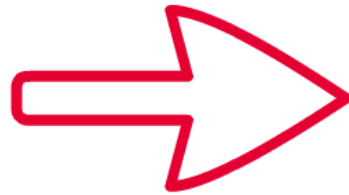
※ 노동 감시

# 맞춤 광고

= 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 행태정보 수집

개인의  
감시



신상 털기



# 윤리적 처벌이거나 보복이거나

YouTube KR

조상권 침해방지과 개인정보 보호위해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이 年이 흥분하기 시작  
소위말에 진상의 범칙 '짜가발전'...  
대답을 아지 알아야하는데...대꾸안 내가 잘못

2011/03/17 22:53:32

2:12 / 5:21

그 유명한신 택시 진상녀

jackpot2727 · 동영상 4개

구독 77

649,051

74 45

#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성과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핵심 가치들의 버팀목이다.” - 호주 프라이버시 헌장



혼자 있을 권리  
- 신체 프라이버시  
- 통신 프라이버시  
- 주거 프라이버시  
- 명예 프라이버시





# 1세대 프라이버시권



# 혼자 있을 권리

- 신체 프라이버시
- 통신 프라이버시
- 주거 프라이버시
- 명예 프라이버시
- 익명 프라이버시

# 2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1980)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보호의 원칙
6. 공개성의 원칙
7. 참여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 3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 동의권의 무기력 : 권력의 차이

- 기업 vs. 개인 소비자
- 국가 vs. 국민
- 사용자 vs. 노동자

#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9월 30일 제정 시행

#### 목적

1.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2.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3.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4.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5.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6.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7.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8.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9.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10.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규정

#### 목적의 범위 및 제3자 제공 금지

목적외로 목적의 범도 제공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1. 정보주체의 동의  
2. 정보주체의 동의  
3. 정보주체의 동의  
4. 정보주체의 동의  
5. 정보주체의 동의  
6. 정보주체의 동의  
7. 정보주체의 동의  
8. 정보주체의 동의  
9. 정보주체의 동의  
10. 정보주체의 동의

#### CCTV 규제

1.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3.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4.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5.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6.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7.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8.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9.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10.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목적외로 제공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1. 정보주체의 동의  
2. 정보주체의 동의  
3. 정보주체의 동의  
4. 정보주체의 동의  
5. 정보주체의 동의  
6. 정보주체의 동의  
7. 정보주체의 동의  
8. 정보주체의 동의  
9. 정보주체의 동의  
10. 정보주체의 동의

## 수집 제한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예외적으로 목적외 용도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 ① 정보주체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적인 조약의 이행,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및 유지, 재판, 형 및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수집 당시 밝힌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 CCTV 규제

①법령이 허용하고 있거나 ②범죄 예방 및 수사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④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처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식시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내판 없는 몰래 카메라는 불법이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목적 외로 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정보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노동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중계기나 GPS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 사회의 인권